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의 쟁점과 향후 방향

이우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1999년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 공공투자관리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한

예비타당성조사* (이하, 예타)

1. 국가의 대규모 공공투자 신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사전적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지는 제도
2. 합리적 관점에서 무분별한 예산의 사용을 방지하고 예산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 주된 목적



하지만 **2019년도에** 예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개편의 주요 이유는 **균형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요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 분석**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

(실제 2015년 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낮지만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한 건)



이에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등

예타 도입 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2019년 주요 제도 개편 내용

(SOC 분야)

목적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음	수도권	비수도권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	평가항목 사전가중치 개선	경제성	35~50%	60~70%	30~45%
		정책성	25~40%	30~40%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30~40%
	지역낙후도 점수	지역낙후도	가감점제	가점제	
	정책성 평가 내실화			"정책효과"항목 신설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평가	
제도운영의 공정성, 효율성 강화	종합평가 거버넌스 개편		KDI 연구진 중심	기재부, '분과위원회'	
	예타조사기관 다변화		KDI (비R&D사업) KISTEP (R&D)	조세재정연구원 (비R&D사업)	
	예타 조사기간 단축			1년내 조사 완료	

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 정동호(2024)를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정동호(2024)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의 효과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구분	제도개편 전(1999~2018)	개편 후(2019~2022)
사업건수	707	78
총사업비(조 원)	334.5	72.5
B./C값 1이상 (건)	340	44
B./C값 1이상 (%)	48.1	56.4
통과건수	454	70
타당성확보율(%)	64.2	89.7

주 :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 기타 부문까지 모두 포함.

자료: 유재광(2025)



1. **통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2. **낙후지역 배려**라는 목적 달성 측면에서 **절대적으로는 성공**

3. 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지역에서도 AHP(계층화 분석법) 점수가 높아져 **낙후지역을 특별히 배려했다고 보기 어려움**



예타 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관련 쟁점

1.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 상황

현재 예타 대상사업 기준인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은
1999년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

경제규모와 물가 등 현실을 반영하여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치

+ 2025년 8월,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발표



2. 평가항목의 가중치 조정

: 경제성 분석 완화와 균형발전 확대

<SOC 사업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항목별 평가 가중치 변화(1999~2019)>

사회	'99	'04하반기	'05하반기	'08하반기	'11하반기	'17하반기	'19하반기
경제성	-	45~65 (도로, 철도)	40~50	40~50	40~50	35~50	수도권 60~70 비수도권 30~40
정책성			25~35	25~35	25~35	25~40	수도권 30~40 비수도권 25~40
지역균형발전			15~25	15~30	20~30	25~35	비수도권 30~40

자료 : 정동호(2024)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경제성의 가중치가 낮아지고**

(2019년도 수도권은 오히려 확대)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비수도권 등 지역에서는 경제성 비중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

(경제성 분석이 화폐 가치로 환산 가능한 편익만을 고려해 사회적 가치나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함)



3. 연구개발(이하, R&D)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2024.5.17.)

“신속, 유연한 R&D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폐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24.6.4.)

“R&D 예타 폐지 후속 조치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의결”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쟁점 중 하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예타 폐지가 발표되었다는 것

(R&D 사업 예타 폐지는 기존 예타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예타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한 검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



4.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조정

예타 면제 대상사업은 10개 유형으로 법률에 규정
이 중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규정한
10호가 추상적이라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될 가능성 높음

예타 면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공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면제 확대는 예타 제도의 관문 역할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킴)
필요하다는 입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함)



개선 방향 및 결론

1. 예타 기준 금액인 **총사업비 법률 개정 기대**

한국의 경제 규모와 재정 상태를 반영하여 **금액 상향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최근 **행정부와 입법부가 금액 상향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번에는 가능할 것이라 기대

2. **평가가중치 조정**

한편에서는 **국가균형성장 측면에서 정책성과 균형발전항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성 분석이 중요하다**고 주장



3. **R&D 예타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재량권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훼손을 방지하는 **견제 장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4.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대규모 SOC**
사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타 면제**는 반드시 필요함
그렇다면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시 **그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5. 예타 면제 사업은 사전 검증 절차가 생략되었으므로
사업 추진과정과 완료 후 실제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예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요구인 지역균형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의 핵심!**

이를 위해 개별 사업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전체 재정관리 관점에서 예타 제도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5). <에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 기획재정부. (2025). <에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김태일. (2019). 에비타당성조사의 쟁점 및 개편안 분석: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3(3) 243-268. 한국행정학회
- 박인권. (2013).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에비타당성조사의 한계와 개선과제. <한국공간환경정책학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공간환경정책학.
- 박현. (2025). 공공투자관리의 글로벌 동향과 공공투자의 역할. <공공투자 Brief 창간호>.
- 신가희·김영록·하연설. (2016).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에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책화에 관한 연구:
-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4), 141-167. 한국국정관리학회.
- 신가희·하연설. (2015). 예산심의과정에서 에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2), 527-564. 한국정책학회.
- 엄근용. (2019).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에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유경호. (2014). <에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제성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광. (2025). 에비타당성조사제도의 최근 변화 경향 및 민자 연계 방안을 위한 고찰.
- <202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이병철. (2024). R&D 에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나포커스>, 73. 국회예산정책처.
- 이세진·박인환. (2023). 에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2104. 국회입법조사처.
- 이현정·김재훈. (2017). 에비타당성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행정학보>, 51(4), 353-585. 한국행정학회.
- 정동호. (2024). <에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정동호·김의준. (2020). 에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변화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
- <예산정책연구>, 9(3), 3-30. 국회예산정책처.
- 최근혁. (2024). <제도 개편이 정책분석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비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근혁·김봉환. (2025). 에비타당성조사의 정치적 연구: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재정학연구>, 17(2), 35-67. 한국재정학회.
- 한국개발연구원. (2020).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25). <202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경남신문. (2023.10.25)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5년째 적정성 재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6.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2019.4.3). "에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2.9.3). "에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5.8.14). "세컨드홈 지원확대, 열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뉴스위크. (2023.10.25). "첫 걸음도 못 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 대전일보. (2025.11.17). "에타 기준 완화, 잇따른 법안 발의... 논의는 제자리"
- 제427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2025.7.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https://www.kosis.kr/>